

서울특별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79호)

제안설명



2021. 2. 2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국가 환경종합계획’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2월 9일 ‘환경보전계획’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은 기존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들이 자연, 대기, 수질과 같은 환경보전 대상에 대한 관리에 중점을 둔 것에 대비하여 향후에는 환경보건,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환경이슈에 대

한 대응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계획으로 확장발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내용을 동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환경보전 계획’ 명칭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통해 환경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 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